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9 선고 2021가단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D생) 사이에 2020. 10.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53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9차131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지급명령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E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F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2020. 10. 26.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53892호로 2020. 10. 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대구지방법원 2020개회3820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9. 6.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1. 12.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그 소제기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B가 이를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별지